



공개된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비공개된 조합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관련 항소심 사건

14

Integrated Cash Management v. Digital Transactions, 920 F.2d 171 (199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사건번호	1459
판결 일자	1990.12.04	판결 결과	전부 기각
원고 (피항소인)	인티그레이티드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 (Integrated Cash, Management Services, Inc.), 캐시 매니지먼트 (Cash Management Corporation)		
피고 (항소인)	디지털 트랜스액션 (Digital Transactions, Inc.), 니콜라스 씨. 미트소스 (Nicholas C. Mitsos), 알프레드 심스 뉴린 (Alfred Sims Newlin), 베루즈 바파 (Behrouz Vafa)		
참조 법령	Trade Secrets Law § 7.02		
참조 판례	Rapco Foam, Inc. v. Scientific Applications, Inc., 479 F.Supp. 1027, 1029 (S.D.N.Y.1979); Lehman v. Dow Jones & Co., 783 F.2d 285, 297 (2d Cir.1986)		
영업비밀	유틸리티 프로그램 조합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프로그램 조합, 금지명령		

02 사건 개요

원고는 은행들이 사용하는 금융 및 재무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하는 회사이고 피고 개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로 전직하였다.

원고는 통합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통신 프로그램, 재무부서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 재무보고서 맞춤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 개인들이 원고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코드들을 가지고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원고가 영업비밀 부정취득,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불공정경쟁,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중 원고는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였으나, 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여 피고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위 4가지 프로그램을 피고의 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을 6개월간 금지하였고, 피고 개인들이 4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6개월간 금지하였으며, 판결일자 당시 존재하는 4가지 프로그램의 피고들 버전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였다.

본 사건은 피고들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p>원고 제품의 프로그램 조합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p>		<p>비밀이 아닌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조합에까지 영업비밀 보호를 확장한 것은 지방법원의 판단 오류이다.</p> <p>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피고들의 일반적인 기술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p> <p>피고 개인들이 충분히 스스로 해당 소소 코드를 개발할 수 있었다.</p> <p>영업비밀 보호기간을 6개월로 인정하였으면서 판결일자 당시 존재하였던 제품의 배포를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p>

04 판결 요지

영업비밀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소유자의 사업 외에 알려진 정도, 종업원 및 사업 관련 인원들에게 알려진 정도, 비밀성 유지를 위한 수단의 정도, 정보의 가치, 정보 개발에 투자된 노력과 금전, 타인의 정보 취득 및 복제 난이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적용하면 원고의 제품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개별 프로그램이 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 요소들의 독특한 조합이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 비밀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원고의 홍보물에 원고의 프로그램 조합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원고의 홍보물에 공개된 정보가 제품의 구조를 공개할 만큼 상세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도 못했다.

원고 사업장 출입문들은 항상 잠겨 있었고, 모든 종업원들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음은 피고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 제품의 구조는 피고 개인들의 부적절한 공개와 사용 없이는 충분히 획득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의 유틸리티 프로그램 조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에는 명백한 오류가 없다.

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정보를 사용하여 유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개인들도 소스 코드 독자 개발 능력과 별개로 원고의 프로그램 연동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금지적 구제(injunctive relief)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피고들은 지방법원이 피고 개인들의 교육과 일반 경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개인들이 피고 회사에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제한한 금지명령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금지명령의 적절성에 대한 쟁점은 판단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지방법원이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6개월로 인정하였으면서도 판결일자 당시 존재하는 제품의 영구적인 배포 금지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은 6개월간 원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과 달리 판결일자 기준으로 존재하던 피고들의 제품의 배포를 금지시킨 것이다. 이는 피고들이 부정취득한 정보를 6개월간 창고에 보관하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마치 피고들의 것인 마냥 배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들은 6개월 후 원고의 4가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 변경, 개선할 수 있으며, 개선된 프로그램은 배포할 수 있다.

05 Key Point

개별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보들의 독특한 조합이나 상호 작용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정보의 보유자에게 경쟁적 우위를 제공한다면 그러한 조합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 판례이다.

영업비밀 부정취득자가 해당 정보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정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독자

개발할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부정 취득하여 일부라도 사용하였다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침해 물품은 영구적으로 배포가 금지될 수 있다.
